

인천광역시검단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장
람	



제 14 호
2026. 9. 3.(목)

차 례

공 고

○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5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— 1

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. 12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,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3.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1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2. 약정기간 : 2027. 1. 1. ~ 2030. 12. 31.(4년)
3. 금고의 수 및 취급회계 : 단수금고(1개)
 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각종 기금
4. 구금고의 주요업무
 -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
 -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 -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
 -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연계 발행
 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
5. 신청자격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검단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6. 신청절차

○ 서류열람

- 기 간 : 2026. 9. 14.(월) ~ 9. 17.(목)(※ 근무시간 내 09:00~18:00)
- 장 소 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세무1과(북관 1층) (☎032-726-6332)
- 열람서류 : 2026년도 예산서 및 2024, 2025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서
※ 2026년도 예산서는 검단구청 홈페이지(행정공개-예산/재정), 2024·2025년 서구
결산서는 서해구청 홈페이지(행정공개-예산/재정)에서 상시 열람 가능

○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기 간 : 2026. 9. 22.(화) ~ 9. 23.(수) (※근무시간 내 09:00~18:00)
※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
- 장 소 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세무1과(북관 1층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- 제출서류 :
 - 금고지정 신청서 1부(원본1부)
 - 제안서 각 14부(원본1부, 사본13부)
 - 증빙자료 각 14부(원본 1부, 사본13부)
 - 각서, 사용인감확인서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각1부
 - 기타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」에서 정하는 서류

7. 심의·평가방법

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[별표 1]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[별표 2]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·검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 및 심의·평가
- 평가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함. 다만,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.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

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.

- 심의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,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-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,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3-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, 4. 금고업무 관리능력, 6-가. 탄소중립 기여도 중 출구실적 및 계획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 및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예정임.

8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 가 항 목	배 점
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26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20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21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4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	7
6. 그 밖에 사항	2

※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참조

9. 약정 및 손해배상
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

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-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,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, 향후 금고지정 심의·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. 1. 1.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27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배상의 책임이 있음.

10. 비용부담

-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.

11. 기타사항

-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은 「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금고지정 신청안내서」에 따라 작성하되,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.
-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.
- 제안서 접수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14부 및 증빙자료 14부는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확인서, 법인인감증명서 지참.
- 확인한 제안서 14부 및 증빙자료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검단구 세무1과장 등이 함께 봉합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,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.
- 제안서등 제출된 일체서류(내용)는 반환하지 않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구 세무1과(☎032-726-6332)로 문의